

경운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송선학원 정관 제39조의1(정년보장교원의 심사)에 의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⑤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④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소속 대학(원)의 심사 자료를 토대로 심사하고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교수 및 연구능력,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
2. 학생 생활 및 취업지도 능력과 실적, 산학협동 추진실적

3.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비리여부, 건학이념의 구현 및 학교발전 기여도

제6조(관계자의 회의출석과 자료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세칙) 기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